

#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(대만 5월분)

## 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### <제2차 예고> [식품 알레르기 표기 규정 초안(食品過敏原標示規定草案)] 발표

- **공고기관** :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
- **공고일자** : 2018년 05월 22일
- **공고내용** :
  - 대만 위생 복지부에서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표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국제적 통용 규정 및 대만 국민에게 발생된 알레르기 임상실험 자료 등을 참고하여 2017년 12월 11일 제 1차 [식품 알레르기 표기 규정]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기존에 규정된 새우, 계, 망고, 땅콩, 우유, 계란 등 6개 알레르기 유발 물질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추가 규정
  - 동 공고된 [식품 알레르기 표기 규정]초안에서는 기존 [연어, 고등어, 대구, 메로, 가자미 등 5종 어류 및 제품]을 [어류 및 그 제품]으로 수정했으며 [麵筋蛋白(글루텐) 성분]을 포함한 곡물 및 그 제품]을 [麩質(글루텐) 성분]을 포함한 곡물 및 제품]으로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수정 함
  - 기존 공고된 해바라기 씨는 국제적 통용 규정 상 알레르기원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해바라기 씨는 신규 규정에서 삭제 됨
  - 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만일 본 규정에 따라 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표기 하였을 시 「식품안전위생관리법규정」에 의해 벌금 NT\$3만~300만 원 또는 NT\$4만~ 4백만 원이 벌금 징수가 가능

### <식품 알레르기 표기 규정 초안>

규 정	설 명
1.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(條) 제1항(項) 제10항(款) 규정에 의거	본 규정 제정 근거
2. 시중 판매 식품에 아래와 같은 내용물 첨가 시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제품 라벨링 내 알레르기원 내용물 및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 (1) 감각류 및 그 제품 (2) 망고 및 그 제품 (3) 땅콩 및 그 제품 (4) 우유, 양유 및 그 제품. 단 우유나 양유로 제조된 락티톨(乳糖醇)은 본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음 (5) 계란 및 그 제품	본 규정의 사용 범위 및 알레르기원 분류별 표기 규정

규 정	설 명
(6) 견과류 및 그 제품 (7) 참깨 및 그 제품 (8) 글루텐 곡물 및 그 제품. 단 곡물로 제조된 포도당(葡萄糖漿), Maltodextrin(麥芽糊精) 및 술 종류 제품은 본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음 (9) 대두 및 그 제품. 단 정제과정 및 정화 과정을 거친 대두유(지방), 혼합형식의 토코페롤(tocopherols) 및 그의 유도체, 또는 피토스테롤(Phytosterol), 피토스테롤 에스터 등은 본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음 (10) 어류 및 그 제품. 단 어류로 제조된 젤라틴을 비타민 또는 카로티노이드(carotenoid)에 사용하거나 술을 정화하기 위해 사용했을 시에는 본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음 (11) 아황산염 및 이산화황 등을 사용하여 1kg 당 10mg의 이산화황이 잔류 된 제품	본 규정의 사용 범위 및 알레르기원 분류별 표기 규정
3. 표기 방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서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함 (1) [본 제품에는 OO(알레르기 유발 내용물 이름)이 포함되어있음] [본 제품에는 OO가 포함되어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자에게 적합하지 않음]또는 동일한 뜻의 문구를 표기 함 (2) 제품명에 [OO] (알레르기 유발 내용물 이름)이 표기 되었을 경우 내용물이 이미 기재되었으므로 주의 문구를 따로 표기 할 필요 없음	알레르기원 문구 표기 방법

<자료원>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2018.5.22. 공고

- **시사점**: 대만의 라벨링 표기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, 알레르기 관련 라벨링 표기도 초안 발표됨에 따라 동 규정에 대한 표기법을 사전 숙지해야 하여 한국식품 對대만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함

<공고> [포장 식용 식초 라벨링 표기 규정 (包裝食用醋標示規定)] 발표

- **공고기관** :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
- **공고일자** : 2018년 5월 1일
- **문서 근거** : 식품안전관리법 제22조(條), 제2항(項), 제10항(款)
- **공고내용**
  - 대만 복리부에서는 식초에 대한 정보가 보다 투명하도록 전년 2017년 6월 6일 식초 제품을 3분류 [양조식초], [조리식초], [합성식초]로 세분화 하여 라벨링에 대한 신규 표기법을 발표하였음. 본 규정은 금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, 만일 본 규정에 따라 표기를 명확하게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NTS3만~ 300만원의 벌금 징수

<포장 식용 식초 라벨링 표기 규정>

규 정	설 명
1. 본 규정은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제22조(條), 제1항(項), 제10항(款) 규정에 의거 함	본 규정 제정 근거
2. 본 규정은 포장 식용 식초의 조리 식초 및 합성식초 라벨링 표기 규정을 제정 함	본 규정 사용 범위
3. [조리식초]의 정의는 양조식초 원료 및 기타 원료를 첨가하며, 기타 산도 조절제 등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제조 과정을 거친 조리식초를 뜻함. 라벨링 표기에는 [조리] 라는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해야 함	- 조리식초 표기 규정 - 본 규정에서 정의한 양조식초란 곡물, 과일, 알코올, 주정박, 설탕 등으로 발효를 시킨 제품으로 초산 및 빙초산이 첨가 되지 않은 식초를 뜻함
4. [조미식초]의 정의는 식품첨가물 초산 및 빙초산을 첨가해 희석한 액체에 설탕, 산도조절제, 조미제, 식염 등을 넣어 조미액을 제조. 이 조미액에 양조 식초를 넣어 제조한 식초를 합성식초로 함. 라벨링 표기에는 [합성]이란 문구를 표기해야 함	합성식초 표기 규정

- **시사점** : 대만 시중 판매 식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포장식초제품의 원료에 따른 등급 구분과 표기 규정이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므로 對대만 한국 식초제품 수출 시 라벨링 표기사항 및 시행일에 대한 주의가 필요 함